

Tax News 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8 May 2023

삼성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이전가격

인도: 대법원의 정상가격범위 관련 고등법원 판결 번복

1) 개요

인도 대법원은 최근 일련의 항소심에서 정상가격범위 관련 고등법원의 판시사항들을 번복시켰음

- 인도 과세당국(Income Tax Department, 이하 "ITD")은 인도조세심판원(Income Tax Appellate Tribunal, 이하 "ITAT")이 산출한 정상가격범위에 이의를 제기하며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고등법원이 이를 기각함 (PCIT v. Softbrands India (P) Ltd. [2018] 406 ITR 513 (Kar))
- 고등법원은 정상가격범위를 산출하기 위해 ITAT가 선정한 비교가능회사에 대한 다툼은 사실판단(question of fact)의 영역이므로, 법리판단(question of law)의 영역만을 다루어 고등법원의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함

2) 대법원 판결

ITAT 가 산출한 정상가격범위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에 대한 ITD 의 이의 제기를 대법원이 수용함

- 대법원은 ITAT가 정상가격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관련 법규를 적법하게 해석 및 적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 또한 법리 판단의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등법원의 검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결함
- 더 나아가 ITAT가 가용한 자료에 충실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비교가능회사를 선정하였는지도 고등법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임

[KPMG 의견]

ITAT 는 오랫동안 이전가격 관련 비교가능성 측면에서 비교가능회사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최종결정권자로 여겨져 왔음.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향후 ITD 의 항소가 고등법원으로부터 수용되는 경우가 많아진다면, 이미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진 인도의 조세소송 절차에 있어 불확실성과 소송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납세자들은 이전가격보고서를 철저히 작성 및 구비하고 이전가격사전합의(APA)와 상호합의절차(MAP)을 추진하여 이전가격 이슈를 다방면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사우디아라비아: 이전가격 규정 개정 및 BEPS 문서화 규정 도입

사우디아라비아 자카트국세관세청(Zakat, Tax and Customs Authority, 이하 "ZATCA") 이사회는 2023년 3월 20일,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이전가격 규정의 개정을 승인함

개정내용으로는 자카트(사우디 내국인(법인 포함)이 이슬람 율법에 따라 사우디 정부에 세금 대신 납부하는 조세제도) 납부자에 대한 이전가격 규정 적용범위 확대 및 정상가격 사전승인제도의 도입이 있음

개정된 규정에 따라 모든 자카트 납부자는 규정된 이전가격 정보서식에 특수관계거래 정보를 작성하고 사실확인서와 함께 제출할 의무가 있음

또한, BEPS 문서화 규정이 도입되어 다음과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자카트 납부자의 경우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 및 정상가격 분석을 포함한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를 구비할 의무가 발생함

- 2024년 - 2026년: 특수관계거래 SAR 1억(약 353억 원) 이상의 사우디 내국법인
- 2027년 이후: 특수관계거래 SAR 4800만(약 170억 원) 이상의 사우디 내국법인

ZATCA는 추후 상기 이전가격 규정 개정 및 BEPS 문서화 규정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02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조심 2022 중 2863, 2023.03.20

청구법인은 국내 특수관계법인 및 사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정상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1) 사실관계 및 불복경위

- 청구법인은 스웨터 제조 및 수출업과 관련하여 국내 제조 여건 악화 등을 사유로 1994년 9월 염색사 제조업을 영위하는 현지법인 OOO Ltd (이하 "AAA")를 설립하고, 1997년 스웨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 Ltd (이하 "BBB"라 하며, AAA와 BBB를 합하여 "쟁점해외현지법인들"이라함)를 설립하였음. 청구법인은 AAA에 원사를 공급하면 AAA는 니트류 봉제공장인 BBB 및 현지 거래처에 판매하며, BBB는 AAA

로부터 공급받은 염색원사를 사용하여 스웨터를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는 방식의 사업구조임

- 조사청은 2016~2020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 ①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원사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AAA에 대한 매출채권(이하 "쟁점매출채권"), AAA 및 BBB에 대한 미수금 (AAA와 BBB에 대한 미수금을 합하여, 이하 "쟁점 미수금")을 정상회수기간이 지나서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국조법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를 근거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따라 산출된 이자 상당액을 정상이자로 보아 익금산입하였음
 - ② 청구법인은 AAA가 2014년 000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미화 약000달러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고 이에 따라 2018 사업연도 000원 및 2019 사업연도 000원 합계 000원 (이하 "쟁점대위변제액")을 대위변제하였는데,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대위변제액을 2018사업연도는 중단사업손실, 2019사업연도는 잡손실로 각 회계처리하여 채권을 임의포기하였으므로 쟁점대위변제액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에 및 제19조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에 따라 손금불산입하고 AAA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음

2) 쟁점

- ① 쟁점매출채권 및 쟁점미수금을 미회수한 것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② 쟁점대위변제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조세심판원 판단

(1) 쟁점①

청구법인은 2007년 원사 등의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AAA에 대한 매출채권 상당액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후 채권 보전을 위한 조치 없이 계속적으로 AAA에 원사 등을 외상으로 공급한 점,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국내의 특수관계법인 및 사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에 대하여는 그 이자를 지급하고 손금처리 하였으나, 쟁점매출채권에 대하여는 정상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점, 쟁점해외현지법인들은 자본잠식 상태로 신용도 산출이 어렵고 쟁점매출채권의 만기도 정해져 있지 않아 비교가능거래를 찾을 수 없었다는 처분청들의 답변이 설득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들이 쟁점매출채권 및 쟁점미수금에 대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따라 산출된 이자 상당액을 정상이자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2) 쟁점②

국조법 시행령 제3조의3은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등 일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대위변제액을 구상채권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채권인 선급금으로 처리하였다가 이후 선급금을 중단사업처분손실 또는 잡손실로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대위변제액을 비용으로 처리한 것은 그 실질이 채무면제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03 관세

英, '탈 EU 화' 가속 및 한-영 FTA 개선 협상 대비 수출 공급망 확대 필요

- 영국 수출 기업·업계, 전략적 공급망 구축으로 영국 공급망 재편 대응 주문
- 2030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친환경차 시장 커
- 산업부 "연내 FTA 개선 협상... 수출여건 개선 박차"

1) 브렉시트(Brexit) 이후 영국 공급망 대체

브렉시트 이후 영국 무역 공급망은 탈EU 현상이 시작됨. 영국의 대(對)EU 수입이 감소하는 반면 중국, 인도 등 비(非)EU권에서의 수입은 증가하는 추세임. 특히, 영국이 수출입하는 주요 품목 중 자동차,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등은 대(對)EU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하는 등 공급망 대체가 진행 중임

영국 공급망의 탈EU화는 영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 간 자유무역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함에 따라 향후 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영국 `23.3.31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협상 타결 발표

2) 대(對)영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 공급망 확대 필요

우리 대(對)영 주요 수출품이자 영국에서 탈EU화가 뚜렷하게 진행 중인 자동차, 자동차부품을 비롯해, 화학제품, 전력기자재 등에서 공급망 확대·강화가 필요함. 특히, 2030년 이후 영국 내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수출 잠재력이 큰 만큼, 이에 대한 공급망 강화가 필수적임

* 우리나라 친환경 자동차의 대(對)영 수출 동향(대수 기준)

전기차 : ('18) 1,461 ⇒ ('19) 2,888 ⇒ ('20) 20,639 ⇒ ('21) 27,085 ⇒ ('22) 31,262

하이브리드 : ('18) 13,309 ⇒ ('19) 18,251 ⇒ ('20) 20,461 ⇒ ('21) 19,463 ⇒ ('22) 32,558

3) 산업부, 한-영 FTA 개선 협상 관련 수출 여건 개선 박차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기업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한영 FTA 개선 협상을 앞두고 있는 만큼 FTA를 통해 공급망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협상에 반영하여 우리 기업의 대(對)영 수출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함.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수출 확대에 기여하는 FTA 공급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함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대(對)영 주요 수출 기업 간담회, 23.4.24)



Key Contacts

삼성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김태준 상무

T. 02-2112-0696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김태주 상무(관세)

T. 02-2112-7448

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